

제335회 임시회
2014.10.24.(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0
----------	----

2014. 10. 24.(금)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임순묵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4년 10월 6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10월 7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0월 17일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임순묵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의무조항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삭제하여 도민이 불필요한 규제로 행위에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도로 연결허가 원상복구 및 허가취소 조항 삭제

(안 제15조, 16조 삭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용어순화 등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문홍열)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도로법」 개정(법률 제12248호, 2014.1.14., 전부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제 사항을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현행 조례 제15조(원상복구)는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¹⁾ 및

「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²⁾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가 된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제16조(허가취소)는 「도로법」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³⁾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중복 규정한 것은 자치법규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밖에 개정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4. 9. 15. ~ 10. 5.)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1)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2)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 ② (생략)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3)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 4. (생략)

② (생략)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도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행위에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를 “제52조”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5조”로, “제20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경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를 “제1항에 따른 연결외의 연결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의2제1호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설치하는 때”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⑤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⑥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⑦도로의 연결지점							
⑧사용목적							
<p>「도로법」 제52조제1항 및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연결계획서 1부						없음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⑤허가번호							
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⑧도로의 연결지점							
⑨사용목적							
⑩연장사유							
<p>「도로법」 제52조제1항 및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도로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허가번호							
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⑧도로의 연결지점							
⑨사용목적							
⑩변경내용							
<p>「도로법」 제52조제1항 및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u>기타</u>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 8.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방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u>경우에 이를 적용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 다만,</p>	<p>제1조(목적) ----- <u>제52조</u>----- ----- <u>그 밖의</u> ----- ----- ----- <u>그 밖에</u> ----- ----- ----- ----- ----- ----- -----.</p> <p>제2조(정의) ----- ----- <u>각 호</u>-----.</p> <p>1. ~ 8.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① ----- ----- ----- <u>제15조</u>----- <u>제23조제2항</u>----- ----- ----- ----- ----- ----- ----- <u>경우에</u>-----.</p> <p>② <u>제1항에 따른 연결외의 연결하는</u>----- ----- ----- -----.</p>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연결허가 신청 이전에 연결을 하고자 하는 지방도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⑤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도지사에게 확인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

----- 없을 때에는 -----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

----- 도시지역 -----

----- 도시·군관리계획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도의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지방도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 6. (생략)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속차로가 서로 접

----- 대해서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대해서 -----
----- .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변속차로) -----
각 호-----
----- .

1. ~ 5. (현행과 같음)
- 제8조의2(부가차로) -----

----- .

1. ----- 없으면 -----
----- . -----

치거나 근접되어 본선 도로의
엇갈림 현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된 사업부지 사
이를 부가차도로 연결하고 단
일 진·출입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3. (생략)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5가구 이하 주
택 등의 진입로로서 가각(街角)
정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
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
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
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
설을 설치할 것

3. ~ 6. (생략)

7. 기준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2.·3. (현행과 같음)

제9조(배수시설)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분리대)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에 ----- 인공구조물-----

3. ~ 6. (현행과 같음)

7. -----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제14조(공사시행) 당해 변속차로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가 된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할 경우 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원상복구

- 설치하는 경우-----

-----.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대시설) -----
-----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시행) 해당 -----

-----.

<삭 제>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허가 취소)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결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예정일보다 1년 이상 준공이 지체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생략)

<삭 제>

제15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부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